

4차시

#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 지식재산권(저작권)

변호사 / 공인회계사 이 은 종

# Contents

- 1 저작권의 개념**
- 2 저작권 등록 절차**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4 체납세금 등**

# Contents

## 1 저작권의 개념

1. 저작물
2. 저작물의 구분
3.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4. 저작자

# 1. 저작권의 개념

## 1. 저작물

### ■ 저작물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됨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로 구분됨

# 1. 저작권의 개념

## 2. 저작물의 구분

### ■ 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의 구분	내용
어문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li><li>•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설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됨</li><li>•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음</li></ul>
음악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li><li>•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음</li></ul>
연극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li><li>•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實演)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됨</li></ul>

# 1. 저작권의 개념

## 2. 저작물의 구분

### ■ 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의 구분	내용
미술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li><li>•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됨</li></ul>
건축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 등</li><li>•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됨</li></ul>
사진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함</li></ul>
영상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li><li>•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함</li></ul>
도형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li></ul>

# 1. 저작권의 개념

## 2. 저작물의 구분

### 저작물의 구분

저작물의 구분	내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li></ul>
2차적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li><li>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li></ul>
편집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li><li>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li><li>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li></ul>

# 1. 저작권의 개념

## 3.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1. 저작권의 개념

## 3.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 ■ 외국인의 저작물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됨
-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 위와 같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함

# 1. 저작권의 개념

## 3.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 ■ 공동 저작물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음

# 1. 저작권의 개념

## 4. 저작자

### ■ 저작자의 개념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
  - 저작자는 저작권(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함
  -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 1. 저작권의 개념

## 4. 저작자

###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업무상저작물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됨
-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일 것
  - 5)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것

# Contents

## 2 저작권 등록 절차

1. 저작권의 등록

2. 저작권의 변동등록

3. 저작권 권리자 인증

# 2. 저작권 등록 절차

## 1. 저작권의 등록

### ■ 개요

- 저작권 등록 :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

### 저작권 등록 사항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음

# 2. 저작권 등록 절차

## 1. 저작권의 등록

### 등록절차

-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저작권 등록 서류

-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2. 저작권 등록 절차

## 1. 저작권의 등록

### 등록절차

-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저작권 등록 서류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 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

# 2. 저작권 등록 절차

## 1. 저작권의 등록

### 등록절차

- 저작권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 또는 프로그램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2. 저작권 등록 절차

## 1. 저작권의 등록

### 등록신청의 반려

#### 반려 사유

-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이 서식에 맞지 않은 경우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반려하지 않음

# 2. 저작권 등록 절차

## 1. 저작권의 등록

### ■ 등록신청의 반려

-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함

# 2. 저작권 등록 절차

## 1. 저작권의 등록

### ■ 권리등록의 효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함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 2. 저작권 등록 절차

## 2. 저작권의 변동등록

### ■ 권리변동 등록사항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 권리

※ 출판권 :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

# 2. 저작권 등록 절차

## 2. 저작권의 변동등록

### ■ 권리변동 등록사항

-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2)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 4)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 2. 저작권 등록 절차

## 2. 저작권의 변동등록

### ■ 권리변동 등록절차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변동등록 서류

- 등록신청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2. 저작권 등록 절차

## 2. 저작권의 변동등록

### ■ 권리변동 등록절차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변동등록 서류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 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2. 저작권 등록 절차

## 2. 저작권의 변동등록

### ■ 권리변동 등록절차

- 권리변동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기록함으로써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함
-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을 한 등록신청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발급받음

# 2. 저작권 등록 절차

## 2. 저작권의 변동등록

###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음
-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임
-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될 수 있음
-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 저작권 등록 절차

## 3. 저작권 권리자 인증

### ■ 저작권 권리자 인증

- 저작권 권리자 인증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

#### 권리자 인증 절차

-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권리인증신청서
  -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1) 권리인증서
  - 2) 이용허락인증서

# Contents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저작권의 구분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공표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음

### 저작물의 공표 동의 추정 · 간주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
-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봄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짐
- 성명표시 의무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재학생의 산문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지은이를 해당 학생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짐

#### 동일성 유지권의 적용 제한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됨
  - 1)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인격권 : 일신전속성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함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구분	내용
복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li><li>•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li></ul>
공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이라 하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가 있음</li><li>•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li></ul>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구분	내용
공중송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li><li>1)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li><li>2)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함</li><li>3)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li></ul>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구분	내용
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li><li>•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됨</li></ul>
배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li><li>•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하는데,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음</li></ul>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구분	내용
대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li></ul>
2차적저작물작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li></ul>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저작권의 구분

###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음
-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되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함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봄**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 청구

-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

- 저작권 침해의 정지 청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위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저작인격권

#### 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저작재산권 : 손해배상의 청구

#### 손해액의 추정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함
-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실의 추정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3. 저작권 구분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저작재산권 : 손해배상의 청구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추정으로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저작물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봄

#### 손해액의 인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Contents

## 4 형사 처벌

1. 저작권법

2. 고소

3. 양벌규정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7조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형사 처벌

## 저작권법 제13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형사 처벌

## 저작권법 제13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4. 형사 처벌

## ■ 저작권법 제13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4. 형사 처벌

## ■ 고소(저작권법 제140조)

### 제140조(고소)

-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4. 형사 처벌

## 양벌규정

###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차시

#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 지식재산권(저작권)

감사합니다